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책임한도를 수정하고, 「국세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43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3조의2 본문 중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
2.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 ----- ----- ----- ----- ----- ----- ----- ----- ----- ----- ----- ----- ----- -----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 ----- ----- ----- -----.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
외한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
액에 해당 과점주
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
다.

<신 설>

<신 설>

--다음 각 호의 금
액 중 작은 금액--
-----.

1.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

2.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

		<u>는 금액에 해당</u> <u>과점주주가 실질</u> <u>적으로 권리를</u> <u>행사하는 주식</u> <u>수(의결권이 없는</u> <u>주식은 제외한다)</u> <u>또는 출자액을</u> <u>곱하여 산출한</u> <u>금액</u>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29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김미애 · 유용원 · 박상웅
이종배 · 김기현 · 김소희
권영진 · 주호영 · 이달희
조은희 · 조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책임한도를 수정하고, 「국세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안 제43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장기요양보험료”로”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

2.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3조에 따른 징수금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상실, <u>장기요양보험료 등</u> 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 <u>장기요양보험료</u> ”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 ----- ----- ----- ----- ----- <u>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u> (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 ----- -----.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④ (생략)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
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
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신설>

-장기요양보험료등-----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에 대
한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장
기요양기관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제
43조에 따른 징수금과 그 연체
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에게 그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
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
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
점주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
로 한다.

1.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
식의 인수가액 또는 출자액

	2. <u>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u>
--	--